

5. Ashish Ahuja 'Lok Adalats: A Practical Examination' 6 *Student Advocate* (1994) 21.
6. K.Gupteswar 'The Statutory Lok Adalat: Its Structure and Role' 30 *Journal of Indian Law Institute* (1988) 174.
7. Rosencranz, Divan, et.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in India* (1992), N.M.Tripathi Pvt. Ltd., New Delhi, Pp.134-138.

10. Law Reform for access to Justice for the poor and under-privileged people

- 10.1 Law Reform processes

- 10.2 Lobbying and public advocacy groups

- 10.3 Right to know and access to information

- 10.4 Participating mechanisms

References:

1. V.R.Krishna Iyer, *Freedom of Information* (1990), Eastern Book Co., Lucknow.
2. Gurjeet Singh 'Indian Legal Research: An Agenda for Reform' (1994) 6 *National Law School Journal*, 83.
3. Peter Sack, 'Law Reform' 30 *Journal of Indian Law Institute* (1988) 309.
4. Govind Mishra 'Right to Know: A Critique of Prabha Dutt's Case' Vol.9, *Indian Bar Review* 1987 p.116.
5. Rosencranz, Divan, et.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in India* (1992) N.M.Tripathi Pvt. Ltd., Bombay, Pp.139-150.
6. C.K.Tahwani *Civil Procedure* 3rd Edn., (1994) Eastern Book Co., Lucknow, Pp.96-101.

UNIT - IV

11. Public Interest Litigation (PIL)

11.1 Nature and Scope

11.2 Epistolary Jurisdiction of Courts

11.3 Democratisation of judicial remedies

11.4 Judicial activism and its limits

References:

1. V.R.Krishna Iyer 'Public Interest Litigation and Constitutional Justice in Action' in R.V.R. Chandra Sekhara Rao and V.S.Prasad (eds.) *Indian Constitution and Polity* (1991) Sterling Publishers pvt. Ltd., New Delhi, Pp.74-95.
2. S.K.Agrawala *PIL in India: A Critique* (1985) (K.M.Munshi Memorial Lectures, Second series), N.M.Tripathi Pvt. Ltd., Bombay.

3. Mool Chand Sharma *Justice P.N.Bhagwati Court, Constitution and Human Rights* (1995) Universal Book Traders; Delhi.
4. Mool Chand Sharma 'Has the Judiciary gone too far' Vol.11, *Indian Bar Review*, 1984.
5. Upendra Baxi 'On the Shame of not being an activist: Thoughts on Judicial Activism', Vol.11, *Indian Bar Review* 1984.
6. Jamie Carrels 'Judicial Activism and PIL: Attempting the Impossible' 37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1989).
7. V.R.Krishna Iyer *Justice at Crossroads* (1992) Deep and Deep Publications; New Delhi, Pp.100-119.
8. N.R.Madhava Menon 'Court and the Poor' *Select Materials on Public Legal Education* (1991) Published by the Legal Services Clinic, National Law School of India University, Bangalore, Pp.233-237.
9. Vimal Balasubrahmanyam *In Search of Justice* (1990) Subhada Saraswat Prakashan, Pune, Pp.234-244.
10. Justice P.N.Bhagwati *Dimensions of Human Rights* (1987) Society for Community Organisation Trust, Madurai.
11. N.R.Madhava Menon 'Public Interest Litigation' in S.C.Bhatia (ed.) *Law and Social Action* (1991), University of Delhi, Delhi, Pp.16-24.
12. N.R.Madhava Menon 'PIL : A Major Breakthrough in the Delivery of Social Justice' Vol.9 *Indian Bar Review* 1982 p.150.

13. M.Krishnan Nair 'Public Interest Litigation' *Cochin University Law Review* 1984 p.484.
 14. M.Rajagopalan 'Constitutional Issues in PIL' *Cochin University Law Review*, 1984 p. 516.
 15. K.Surendra Mohan 'PIL and Locus Standi' *Cochin University Law Review*, 1984 p.523.
 16. Justice P.N.Bhagwati 'Human Rights and Democratisation of Remedies' Vol.10, *Indian Bar Review*, 1983, p.584.
 17. Rosencranz, Divan, et.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in India* (1992) N.M.Tripathi Pvt. Ltd., Bombay, Pp.118-134.
12. P.I.L. and Civil and Political Rights

- 12.1 Preventive detention cases
- 12.2 Free Speech cases
- 12.3 Personal liberty cases
- 12.4 Equality cases

References:

1. M.P.Jain *Indian Constitutional Law* 4th Edn., (1994) Wadhwa and Co., Nagpur, Pp.439-801.
 2. P.S.Chaudhari *Select Essays on the Indian Constitution*, A.Mukherjee and Co. Pvt., Ltd., Calcutta, Pp.18-104.
 3. Jagadish Swarup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1975), N.M.Tripathi Pvt. Ltd., Bombay.
 4. G.S.Bajwa *Human Rights in India: Implementation and Violations* (1995) Anmol Publications Pvt. Ltd., New Delhi, Pp.224-227.
13. P.I.L. and Social and Economic Rights
- 13.1 Right to education
 - 13.2 Right to health
 - 13.3 Right to work/Labour rights
 - 13.4 Right to housing

References:

1. P.B.Sawant 'Right to Shelter as a Human Right' in Justice E.S.Venkataramaiah (ed.) *Human Rights in the Changing World* (1988),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New Delhi, Pp.249-254.
2. G.S.Bajwa *Human Rights in India: Implementation and Violations* (1995) Anmol Publications Pvt. Ltd., New Delhi, Pp.229-244.
3. S.P.Sathe 'Right to Shelter: Review of Housing Law and Policy in Maharashtra' 35 *Journal of Indian Law Institute* (1993) 13.

UNIT - V

14.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14.1 Structure and functions

14.2 Performance and prospects

References:

1. Jose P. Verghese 'A Critique of the Human Rights Bill' *Legal News and Views*, August 1993, Pp.261-275.
2. 'The Human Rights Commission: A Critique' in *Legal News. and Views*, September 1993, p.312.
3. Bharat Jhunjhunwala 'The Human Rights Commission: An Update' *Legal News and Views*, may 1994 p.34.
4. Annual Reports (1994, 1995, 1996) of NHRC.

15. National Commission for Women

15.1 Structure and functions

15.2 Performance and prospects

References:

1. Paras Diwan and Peeyushi Divan *Women and Legal Protection* Deep and Deep Publications, New Delhi, Pp.97-110.

2. S.P.Sathe *Administrative Law* 5th Edn., (1991), N.M.Tripathi Pvt. Ltd., Bombay, Pp.261-265.
 3. Donna J. Sullivan 'Women's Human Rights and the 1993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88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94) 152.
 4. 'National Commission for Women Created' *Legal News and Views*, May 1993 p.181.
16. National Commission for Minorities and SC/ST

- 16.1 Structure and functions
- 16.2 Performance and prospects

References:

1. S.P.Sathe *Administrative Law* 5th Edn., (1991), N.M.Tripathi Pvt. Ltd., Bombay, Pp.244-246.
2. D.D.Basu *Administrative Law* 3rd Edn., (1993) Kamal Law House, Calcutta, Pp.309-316.
3. S.Malik *Commentary on the SC/ST (Prevention of Atrocities) Act, 1989* (1994) Law Publishers (India) Pvt. Ltd., Allahabad, Pp.538-539.
4. Gridhar Gomango *Constitutional Provisions for the SCs and STs* (1992) Himalaya Publishing House, Bombay, Pp.65-67.

17. Commissions of Inquiry and Human Rights protection

- 17.1 Commissions of Inquiry Act: Scope
- 17.2 Select Inquiry Commissions and their work

References:

1. S.P.Sathe *Administrative Law* 5th Edn., (1991), N.M.Tripathi Pvt. Ltd., Bombay, Pp.254-261.
2. G.C.V. Subba Rao *Administrative Law* 5th Edn. (1991), Asia Law House, Hyderabad, Pp.151-152.
3. D.D.Basu *Administrative Law* 3rd Edn., (1993), Kamal Law House, Calcutta, Pp.309-316.

UNIT - VI

18. Human Rights and the mentally ill

18.1 Mental Health Act - Scope

18.2 Mental Health institutions and procedures

18.3 Responsibilities of the professionals

18.4 Problems and challenges

References:

1. Amita Dhanda 'PIL for mentally Ill' 32 *Journal of Indian Law Institute* (1990) 378.

19. Human Rights and the Physically disabled persons

19.1 Disabled Persons and the Law

19.2 Accessing rights for the disabled

References:

20. Enforcing rights of the Child

20.1 Mechanisms for protecting child rights

20.2 Child Labour and Programmes of its eradication

20.3 Child abuse and exploitation

20.4 Problems and prospects

References:

1. Gobinda Mukhoty and Ranjani Ramakrishna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its application to India' in Justice E.S.Venkataramaiah (ed.) *Human Rights in the Changing World* (1988)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New Delhi, Pp.144-146.
2. Sheela Barse 'Law, Social Justice and Child' in Prof. C.J.Samuel (ed.) *Principles of Legislation and Judicial Process* (1992) Department of Law, Pune University, Pune, Pp.308-325.
3. Nera Burra 'Child Labour in India: Poverty, Exploitation and Vested Interests' in S.C.Bhatia (ed.) *Law and Social Action* (1991) University of Delhi, Delhi, Pp.109-130.

4. Ivy George 'Child Labour and Child Work' (1990), Ashish Publishing House, New Delhi.
- "5. Nera Burra *Born to Work* (1995) Oxford University Press; Delhi.
6. Usha Razdan 'Apex Court towards Humanising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33 *Journal of Indian Law Institute* (1991) 366.
7. S.N.Jain 'Child Labour' 23 *Journal of Indian Law Institute* (1981) 336.
8. S.K.Bhattacharya 'Juvenile Justice System in India' 23 *Journal of Indian Law Institute* (1981) 606.
9. Sukumar Pal 'Working Child: Beyond the reach of Law' *Legal News and Views*, April 1993, p.128.

UNIT - VII

21. NGO sector in human rights protection

- 21.1 Media and Human Rights
- 21.2 Role of Professions-Teaching, Medicine
- 21.3 Role of social activists
- 21.4 Strategies for enhancing productivity of NGOs in Human Rights enjoyment

References:

1. Niall McDermott 'The Role of NGOs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Justice E.S.Venkataramiah (ed.) *Human Rights in the Changing World* (1988)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New Delhi, Pp.112-127.
2. G.S.Bajwa *Human Rights in India: Implementation and Violations* (1995) Anmol Publications Pvt. Ltd., New Delhi, Pp.350-359.
3. Nera Desai and Vibhuti Patel *Indian Women* 2nd Edn., (1990) Popular Prakashan Pvt. Ltd., Bombay, Pp.74-80.

4. J.N.Saxena 'Red Cross and Human Rights' 24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84) 393.
 5. 'Human Rights in Asia: The Struggle for Human Dignity - A Report' *Legal News and Views*, February 1993, p.56.
 6. Shalini D'Souza 'The Amnesty Report, Human Rights and North-South Relations' *Legal News and Views* October 1993, Pp.349-353 and 388-393.
22. Technology, Economic Policies and Human Rights

22.1 Structural adjustment and Huan Rights

22.2. Nuclear arm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22.3 Right to information as a human right

References:

1. V.R.Krishna Iyer *Freedom of Information* (1990) Eastern Book Co., Lucknow.
2. M.K.Nawaz 'Law, Human Rights and Computers', 25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85) 612.
3. Eric Sottar 'Economic Polici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Legal News and Views*, Jan 1994, p.33.

23. Cultural context of Human Rights enforcement

23.1 Cultural factors facilitating Human Rights

23.2 Cultural aspects inhibiting Human Rights

23.3 Cultural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 Issues of Universality and indivisibility

UNIT - VIII

24.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of Human Rights enforcement

24.1 Institutions and procedures

24.2 Problems and prospects

References:

1. Rose M. D'Souza 'The Statu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roblems and Prospects for the next 40 years' in Justice E.S. Venkataramiah (ed.), *Human Rights in the Changing World* (1988)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New Delhi, Pp.47-60.
 2. J.R.Gagrat, 'Forty year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the Cause of Human Rights' in Justice E.S.Venkataramiah (ed.) *Human Rights in the Cchanging World* (1988)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New Delhi, Pp.89-90.
 3. Richard B. Lillich 'The U.S.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83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89) 851.
 4. Edgar Turlington 'The Human Rights Commission at Crossroads' 45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51) 534.
 5. Myers S. McDougal and Gorhard Bebr 'Human Rights in the United Nations' 58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64) 603.
 6. O.P. Parmar 'ILO and India: In pursuit of Huan Rights through Labour Standards' 23 *Journal of Indian Law Institute* (1981) 555.
25. Regional Initiative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25.1 SAARC initiatives

25.2 Commonwealth initiatives

25.3 LAWASIA initiatives

References:

1. Lawrence J. Leblanc *The OAS and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1977) Martinus Nishoff Publishers; The Hague.
2. Rajindar Sachar 'Human Rights: Towards a Global Consensus' in Justice E.S.Venkataramaiah (ed.) *Human Rights in the Changing World* (1988),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New Delhi, Pp.214-221.
3. Thomas Burgenthal 'The Inter Aerican Court of Human Rights' 76 *American Journal International Law* (1982) 231.
26. Prospects for betterment of Human Rights standards
 - 26.1 Role of institutions
 - 26.2 Role of governments
 - 26.3 Role of individuals and groups
 - 26.4 Role of legal education

References:

1. Harsh Sethi (ed.) 'Human Rights: Challenges for Theory and Action' (1989) Lokayan Publishers; Delhi, Pp.73-82.

SUMMARY OF REGULATIONS FOR THE DIPLOMA IN HUMAN RIGHTS LAW

1. The Diploma programme shall be conducted through distance education mode under the auspices of the Distance Education Department of the National Law School of India University, Bangalore.
2. The duration of the programme shall be one academic year.
3. A person holding a bachelor's degree in Arts, Science, Commerce, Law or Humanities from a recognized University or a qualification declared by the University as equivalent to it and recognized as such is eligible for admission to and registration for the programme.
4. The medium of instruction for the Diploma programme is English only.
5. There shall be no restriction as to age, nationality or sex for admission and the programme shall be open to employed persons as well.
6. Registration for the programme is valid for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admission.
7. The programme shall consist of four papers, namely,
 - i) Human Rights, Rule of Law and Constitutional Governance: Historical, Comparative, and Analytical Perspectives.
 - ii)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and Enforcement: Civil and Political Rights
 - iii)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and Enforcemen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iv) Human Rights, Legal Aid and Access to Justice.
8. At the end of the academic year, each candidate will have to fulfil the examination requirements as specified below:
 - a) Examination in each paper carries 100 marks
 - b) Examination in each paper has three components:
 - i) project assignment carrying 35 marks;

- ii) oral examination carrying 15 marks; and
 - iii) written examination carrying 50 marks.
 - c) The oral and written examinations shall ordinarily be held at the National Law School of India University Campus in Bangalore at the end of the academic year on the dates specified by the National Law School in this respect.
9. Each candidate is required to submit a project report for each of the four papers in the course based on original research approved by the National Law School of India University on or before the last date indicated for this purpose by the Course-coordinator.
- b) The project reports shall
 - i) be neatly typed or legibly handwritten leaving margin for examiners' comments,
 - ii) approximately consist of 25 typed pages,
 - iii) carry titles and sub-titles, and
 - iv) acknowledge the sources referred to.
10. a) The results in respect of each of the four papers shall be declared in the three segments on a three point scale, namely:
- i) Distinction
 - ii) Satisfactory
 - iii) Non-satisfactory
- b) Those candidates who are placed in 'Distinction' or 'Satisfactory' categories shall be deemed to have completed the course successfully.
 - c) Those candidates who are placed in 'Non-Satisfactory' category will have to repeat the examination in one or more segments of the examination as indicated by the Diploma Examination Committee during the following academic year.
 - d) A candidate will have to fulfill all requirements for the Diploma programme within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failing which the candidate may be required to re-register as a fresh student.

11. Once registration is completed, fee paid will not be refunded though it can be adjusted for registration in the subsequent year.
12. The course is largely based on self-study and the University's role is to suggest methods of study, inform available sources of information for reference and examine the performance according to regulations. The University does not undertake to supply the reading materials though it shall endeavour to provide the basic human rights instruments necessary for the course.
13. All efforts will be made to clarify doubts and respond to questions from students expeditiously by post. If reequested, candidates may be put in touch with knowledgeable persons living in their respective places of residence, if the University is able to locate one in the area. Such persons may assist in advising students on methods of study or access to materials in their areas. This depends on personal relations that the student concerned may develop with the person suggested and there is no official or contractual obligations to be expected out of it.

(Note:- This is only a summary of Regulations. Candidates interested in knowing more details on any particular Regulation are advised to seek clarification or consult the full text.)

95/3/4

고문방지 조약

박래군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총무

고문에 관해서는 전문가 입장이라기 보다는 일을 해 나가면서 남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들춰보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고문에 대해 직접적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문국진씨 때문이다. 유가협에 있으면서 고문 때문에 사망한 경우 어떻게 풀 것인가, 또 의문사한 이철규씨나 이내창씨의 경우 고문에 의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막연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93년 여름, 나는 문국진씨가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가져왔던 영문 자료도 뒤적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느끼게 된 것은 고문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커다란 문제가 되어 왔으며 그 동안 이에 대하여 갖가지 대책을 세웠지만 지금에 와선 쓸만한 자료나 연구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고문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고문의 범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어떤 범주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례들이 있는지 정확하지 않았다. 사례가 수집되어 있는 경우도 없었다. 결국 가장 초보적인 수준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다. 단지 88년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고문에 의한 정신적 후유증은 없다고 발표하는 등 잘못된 몇가지 임상사례만 갖고 있을 뿐이었다.

고문문제 또한 터지고 난 뒤 가족들이 아우성치면 그때서야 대책회의가 생겨서 활동하는데 그쳤고 성과도 남겨두지 못했다. 80년대 특히 85, 86년도 조직사건때는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에 의한 고문사건이 많았다. 당시 인권문제로 가장 중요한 안건이었고 <신동아> <월간조선>에서도 '고문'에 관한 기획특집을 다룬 정도였다.

그러던 중 87년 초 박종철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대한변협과 재야운동단체에서는 고문추방범국민운동본부를 만들겠다고 나서게 되었다. 그 속에 고문근절을

위한 센터, 고문피해자재활센터 등을 두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외국 프로젝트를 따와 덴마크 고문피해자재활센터(RTC)를 사찰하고 와 세미나를 한번 열었을 뿐 축적된 것이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 나라 인권운동이 지속적이면서 예방적이지 못하다는 현 수준을 극명히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제대로 된 고문 해설서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고문을 크게 보면 방법상 육체적 고문, 정신적 고문으로 나뉘지만 고문이란 것은 항상 육체적 고문과 정신적 고문이 같이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잠안재우기 고문이다. 3 일 이상 잠을 안 재우면 보통 인간의 80% 이상이 정신병에 걸린다고 정신 의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고문의 목적은 자백을 얻어내 증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고문대상이 살아있어야 나중에 증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잘못해 죽이는 것은 고문의 원래 목적과는 다르다. 박종철과 이철규의 죽음은 실수에 의한 것이다. 이와달리 이내창의 죽음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는데 설명하기 힘든 부분도 많다. 어쨌든 고문의 주체는 국가이다.

고문을 할 때는 고문범죄자(피해자), 대상(피해자), 도구, 고문협조자, 지시자, 방관자들이 서로 직, 간접적으로 관계된다. 고문에 쓰여지는 도구는 모두 고문도구라 할 수 있다. 고문협조자란 의사를 말한다. 안기부에서 고문을 할 때 우선 고문대상이 얼마나 고문을 견딜 것인가를 체크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들이 협조함으로써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을 느끼도록 고문을 가할 수 있게 된다. 사람마다 한계치를 알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 고문의 증거능력을 없애기 위해 마사지를 하는 의사도 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고문방지조약이 만들어질 때 유엔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게 '의사들의 윤리규정'을 만들도록 하고 그 속에 고문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넣을 것을 요청하였다.

방관자란 알고도 묵인하는 사람이다. 권인숙양 사건 때 문귀동이 직접 고문을 가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면 문귀동만 고문가해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당시 6공안 경검찰서장도 책임이 있다. 묵인, 방조한 사람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하고 고문했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도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고문의 정의

고문은 개인과 개인간의 사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 개인(국민)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존파가 사람을 잡아 놓고 고문을 한다' 한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국가권력이란 고문방지조약에서는 공무원을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 의해, 또는 이들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개인에게 행하는 폭력을 고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문의 목적은 조직사건등을 캤 때 수사상의 목적으로 자백을 얻기 위한 것이다. 고문을 생각할 때 우리는 협소하게 정치범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수들에게 더 많은 고문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목적외에 수사기관이나 공무원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행위도 고문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이러한 폭력을 단순히 경찰폭력이라고 하지 고문이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 경우는 아니지만 로드니킹사건 같은 경우 수사상 목적이란 명분하에 폭력을 행사했었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폭력을 고문이 아닌 인종적 차별로 보았다.

고문방지조약은 이런 것을 고문에 넣고 있다. 무척 광범위하고 국제조약과 비교해 봤을 때 고문방지조약은 명확히 자기 규정을 내려 놓고 있다. 국제 기준에서는 고문을 더 폭넓게 쓰고 있다. 가령 사람을 2시간 이상 세워놓는 것도 소극적 의미에서 고문이라고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는 말하고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 나라는 고문의 의미를 너무 협소하게 보고 있다. 예를 들면 범죄행위로 구속돼 형을 살고 있는 경우 재조차가 내려졌을 때 그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고문이 아니다라고 본다. 감옥환경도 문제다. 한 평의 협소한 공간에 1-2명을 계속 가둬 놓거나 대화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러한 경우도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고문에 해당된다고 본다. 결국 우리 나라에서 장기수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고문의 특징

RTC에서 나온 자료 '고문피해자의 정신병리학'을 보면 고문의 실상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본 것들 중에서 고문의 특징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자료인 듯하다.

여기서는 고문의 특징을 6가지로 들고 있다. ①절대적 불균형성 ②익명성 ③이중의 압박 ④기만성 ⑤공간의 변질 ⑥시간의 변질이다.

①절대적 불균형성 : 절대적 불균형성이란 사람의 관계가 대칭적 관계, 동등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고문으로 인해 한 사람은 피해자로 일방적으로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가해자로서 상대방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형태로 바뀐다는 것이다. 결국 절대적 불균형성은 불균형적인 인간관계를 놓게 하고, 파괴된 인간관계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게 된다.

②익명성 : 고문가해자는 고문피해자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심지어는 애인과의 은밀한 대화까지도 모두 파악해 고문의 수단으로 삼는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문가해자를 모른다. "수사기록에도 고문가해자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이로 인해 형성된 불균형적인 관계들로 인해 대인 공포증, 기피증까지 생기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익명성이다. 85년에 고문당했던 김근태씨의 경우 고문가해자가 이근안이란 사실을 밝히는 데 무려 4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로 보아 이 익명성이란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것인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③이중의 압박 : 고문할 때 주로 '공범자가 누구냐'를 묻는다. 피해자와 같은 조직에 있는 동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을 한다. 이 때 피해자는 고민을 하게 된다. 요구하는 대로 모두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극한적인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가 하는 이중의 정신적 압박에 고통받는다.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부천지역 노동자로 10여년 동안 활동했던 최동씨의 경우 89년 고문당할 당시 겪었던 정신적 압박감으로 인해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자살하고 말았다.

④기만성 : 고문하는 공간에서 고문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말하는 대부분은 허위와 기만에 가득차 있다. 어딘지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들은 마치 피해자의 모든 생각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의 인간관계까지 기만하고 허위로 조작한다. 또한 비명소리를 조작하여 들려줌으로써 공포감을 조성하고 심리적 압박감을 주면서 괴롭힌다. 결국 이런 기만성으로 인해 고문피해자는 심한 두려움에 떨게 되고 고문가해자는 이를 이용해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는 것이다.

⑤공간의 변질 : 아주 좁고 은밀한 공간, 밀실에서 고문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자기만의 공간, 아늑한 장소란 개념은 사라지고 전혀 다르게 인식되고 변질된다. 보통 욕조와 침대를 생각할 때 욕조는 물을 따뜻하게 받아놓고 목욕을 하는 친근한 공간이고, 침대는 편안하게 잠을 청하는 아늑하고 은밀한 곳이지만 이런 장소에서 물고문과 고, 침대는 편안하게 잠을 청하는 아늑하고 은밀한 곳이지만 이런 장소에서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하게 된다면 그 공간은 전혀 다르게 인식된다. 공간 자체의 개념이 변질되는 것이다.

⑥시간의 변질 : 시간의 변질도 공간의 변질과 비슷하다. 고문을 받게 되면 대체로 시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고문가해자의 경우는 1분1초가 치밀하다. 그러나 밀실에서 고문당하는 피해자는 몇 시간이 지났는지, 해가 떴는지 졌는지 전혀 모른다. 이렇게 고문을 당하게 되면 인간관계나 세계관이 왜곡될 수 있으며 일반 정신증상과 다른 외상스트레스장애란 후유증을 나타내게 된다.

고문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에 학살하는 것보다 더 잔인하며 인권유린행위에서도 가장 잔인한 수법이라고 본다. 또한 고문당한 뒤 남는 후유증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준다.

고문의 역사

고문은 국가권력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규제도 없이 고문이 자행되다가 18, 19세기 헌법이나 형법에 의해 조금씩 금지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경우 전통적인 고문 방식은 '네 죄를 알렸다'는 식의 신문과 주리를 가, 명석말이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법적으로는 일본이 법을 제정한 시기인 1907년에 고문금지규정에 들어갔고 그 뒤로 일제에 의해 고문이 상당히 많이 자행되었다. 외국에선 1차대전 이후 상당부분 명시적으로 고문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다시 2차대전 당시 나치들의 유태인학살이 자행되면서 고문금지에 대해 언급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 뒤 국제법의 등장으로 1945년 유엔헌장이 채택되고 나서 세계인권선언 5조등에 고문금지조항이 등장하게 되었다. 1960년 제3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국제인권조약들과 더불어 고문에 관한 조약들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1972년 국제앰네스티(AI)는 전세계적으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 대대적으로 고문추방 캠페인을 벌인다. 그때 AI는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확산되면서 75년 UN에서는 고문방지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

1976년 세계보건기구는 의학윤리법 초안을 만들도록 요청했다. 76년 UN내에서 초안팀이 꾸려지고 79년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로써 세계보건기구에서 의학윤리원칙을 만들게 된다. 정식명칭은 '고문으로부터 사람들의 건강과 기능에 관한 윤리원칙'이다. 82년 37차 UN총회에서 의학윤리원칙이 통과하고 이를 경제사회이사회가 인권위원회에 권고를 한다. 드디어 87년 고문방지조약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고문방지조약에 20개국이 넘는 나라가 비준한다. 그리고 87년 2월6일로 발효된다. 우리 나라는 87번째로 가입, 현재 87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또한 UN인권센터에 원호회생자기금이 있어 프로젝트와 고문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명목상 어느 나라든지 고문방지규정을 헌법에 두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도 고문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의해 고문이 진행, 자행되는 현실하에서 고문방지조약이 만들어지고 헌법에 의한다 하더라도 국가권력이 완전히 민주화되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한 고문은 계속될 것이다. 고문방지조약에도 나와 있듯이 직접적인 고문외에도 앞으로는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인권침해까지도 고문에 준하는 인권유린으로 다뤄나가야 한다.

고문방지조약

고문방지조약은 75년에 채택되었으며 1.2.3부로 나뉘져 있다. 협약보다는 조약으로 쓰는 것이 맞다.

제1부는 고문의 정의, 당사국의 의무규정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1조 고문이란 개인 또는 제3자에게 정보 또는 자백을 얻어내고 그 개인이 행하였거나 그런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그 개인 또는 제3자를 치벌하거나 힘박하거나 강요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근거한 이유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공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의 교시에 의하거나 동의 또는 묵인 하에 그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 및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것은 합법적인 제재조치로써 야기되고 이에 고유한 또는 이에 부수적인 고통 또는 피해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은 합법적 재제조치로 야기되는 것엔 해당하지 않는다. 구속, 수감된 경우에는 고문이라 볼 수 없다.

2조 ①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 내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여타 조치를 취한다. ②전쟁상태 또는 전쟁의 위협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사태와 같은 여하한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③상급 관리 또는 공적인 기관에서의 명령이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이는 고문근절에 대한 의지 표명이라 볼 수 있다. 전쟁이나 비상사태, 어떤 한 상황에서도 고문은 용납될 수 없다. 상급관리, 교직의 명령에 의해 고문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해방전후사의 인식'에서 보면 일제시대 경찰을 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친일을 안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알 수 있다.

3조 어느 당사국도 개인을 그가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다.

고문피해자, 고문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A나라에 사는 사람이 외국인인데 그가 본국으로 갈 경우 고문을 당한다면 아무리 추방당할 조건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추방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4조 각 당사국은 모든 고문 행위가 자국 형법에 의하여 범죄가 됨을 보장한다. 고문의 미수 및 고문에의 공모 또는 가담을 구성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범죄가 된다.

고문미수범이거나 공모에 가담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가 된다. 동등하게 처벌된

다.

5조 ①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관할권의 문제는 고문방지조약이 가진 특성 중 하나이다. ②각 당사국은 범죄 혐의자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 있거나 1조항에 언급된 어느 국가에도 동인을 제8조에 따라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범죄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용환 변호사는 고문피해자들에게 미국으로 건너가 거기서 피해자를 제소해 보라고 제안한다. 몇 년 전 필리핀의 마르코스가 재산을 압류하게 된 것은 그 피해자가 마르코스를 미국법정에 고소한 때문이다. 미국 법정은 마르코스의 재산을 압류해 피해보상을 해 주었다. 5조에서 9조까지는 주로 그런 내용이다.

10조를 보면 인권교육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다.

10조 각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체포, 억류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구금, 신문 또는 처우에 관련될 수 있는 법집행 인사, 민간 또는 군 및 의학계 인사, 공무원 및 기타 인사들의 훈련에 고문금지에 관한 교육 및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보장한다.

고문금지에 대한 교육, 홍보를 꼭 시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되고 있지 않다.

11조 각 당사국은 여하한 경우의 고문도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의 여하한 형태의 체포, 억류 또는 수감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구금 및 처우에 관한 제도와 아울러 신문규칙 지침, 방법 및 관행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고문방지 실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2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 고문이 행하여졌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모든 경우에 소관기관이 즉각적이고 공평한 조사에 착수 할 것을 보장한다.

13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소관기관에 고소할 수 있고, 소관기관에 의해 즉각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동 사건에 대한 조사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우리 나라가 제일 안되는 부분이다.

14조 각 당사국은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조치를 받으며 가능한 충분한 원상회복의 수단을 포함한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자국의 법체계 내에서 보장한다. 고문행위의 결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부양가족이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민사상 구제절차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공소시효가 있다. 민사사건의 경우 고문이 있던 때로부터 전체기간의 10년이라는 규정이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더 짧아 7년이다. 그 안에 고소, 고발하

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그러나 고문방지조약을 보면 공소시효 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 것이 국제인권법의 특성이다.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으며 고문방지조약도 그 정신에 입각해 만들어졌다. 고문행위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피해자의 부양가족이 보상받을 권리를 받는다는 것이 신원권이다. 93년 박종철 사건 때 신원권을 인정하는 첫 판례가 나왔다.

14조는 가능한한 충분한 원상회복의 수단이라 했는데 단지 치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복귀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고문피해자들의 민사배상도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 굉장히 요원한 얘기다.

15조는 고문에 의해 임의의 상태가 아닌 강압에 의해 진술했다고 한다면 재판에서 원용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우리 나라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특히 정치범의 문제 국가보안법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듣는다. 이 조항에 근거했을 때 최대의 피해자는 강기훈씨가 아닐까 싶다. 또한 부산 강주영양의 사건에서 박태범부장판사의 경우 여기에 충실한 판결을 내렸다고 본다.

16조 ① ...고문에 관하여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형태의 잔혹한, 비인도적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②본 규약의 규정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금지하거나 범죄인도 또는 추방에 관련되는 여타 국제문서 또는 국내법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16조는 예방책이다. 명백하게 고문이 아니어도 고문방지조약에 의해 비인도적 형벌, 처우에 대해 문제삼을 수 있다.

제2부 17-24조는 고문방지위원회에 관계된 것이다.

17조고문방지위원회는 높은 도덕을 가지고 인권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동인들은 개인자격으로 근무한다. 전문가는 공평한 지역적 배분 및 법적 경험 소유인사들의 참여 유용성을 고려하여 당사국들에 의하여 선출된다.

그 도덕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위원구성도 애매한 얘기다. 작년 국제인권봉사회(IS)에서 인권교육을 하러 왔던 사람 얘기에 따르면 10명 중 5명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다.

18조 ①위원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자체 절차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a)의사정족수는 위원 6인으로 한다. (b)위원회의 의결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한다. 이는 운영규정에 관한 조항이다.

19조 전 당사국은 본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 내에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그 이후 전 당사국은 자국이 취한 모든 새로운 조치에 관한 추가 보고서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여타 보고서를 4년마다 제출한다.

20조 위원회가 어느 당사국의 영토내에서 고문이 조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믿을 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그 당사국으로 하여금 이 정보를 조사하는데 협조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에 관한 견해를 제시한다.

20조는 28조에 의해 유보가능한 조항이다. 고문방지위원회가 접수하면 비밀조사를 한다. 21, 22조는 선택조항으로 우리 나라 가입하지 않았다. 21조는 국가간 문제 제기권이란 A나라에서 B나라에 고문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수하면, 위원회는 이를 접수한 뒤 3개월 이내에 해당국가인 A나라에 이를 통보하고 6개월 이내에 만족스럽게 시정이 안되면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즉 고문문제에 있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우리 나라는 이 조항을 유보시켰는데 이때 제시한 이유는 북한이 인권문제를 제기할 경우 방어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었다.

22조는 개인청원권으로 내가 고문을 당했다고 할 때 국내 모든 절차를 거치고 난 뒤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고문당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개인이 거쳐야 할 국내의 모든 절차란 우리의 경우 대법원까지를 말한다.

이후에 고문사실을 통보하면 고문방지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사건의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당사국에 제출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특별보고관이 조사토록 한다. 단 단서조항이 있는데 개인청원권을 인정한 가입국의 개인이 청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가입을 안했으므로 직접적으로 청원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처음 제기될 때만 접수가 가능하다. 구제조치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된다거나 당사국이 피해자에게 효과적 구제조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다. 단 익명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고문방지위원회에 믿을 만한 사실 근거를 갖고 그 나라에서 고문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 되는 것이다. 정보는 국제인권단체를 통해 대신 접수하게 한다. 고문방지위원회가 그걸 가지고 조사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회하는 방식이 있다. 우리는 아직 시도는 못해 보았다.

24조까지는 고문방지위원회와 관계된 내용이고, 25-33조까지는 일반조항이다. 비준, 발효 등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제3부 31조에 당사국은 언제든지 탈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고문방지위원회가 다른 UN인권관련기구보다 권한이 센데,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통보하면 1년 후부터 당사국이 아니게 된다.

우리 나라가 고문방지조약에 가입, 발효된 이 시점에서 어떻게 국내에서 적용, 활용할

것인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고문방지 조약의 구체적 조항의 예를 수집하고, 다른 나라나 국제인권단체들이 이 조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국내 고문피해자 처벌에 어떻게 적용했는가하는 연구를 수집, 연구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나라에 실행해야 한다. 또 고문방지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과거의 고문들이 어느 범주에서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면밀히 조사되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공동으로 반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문방지특별법 제정, 감시센터, 고문피해자재활센터 등을 만들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최소한 고문은 아니더라도 굴욕적 비인도적 처우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은 상당히 요원한 일일지도 모른다.

과거 고문은 육체적, 직접적인 형태로 이루어 졌으나 요즘은 점차 고도화되어 정신적 고문이나 심리적 고문등의 특징을 띠고 이루어지는 추세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어느새 철야수사, 철야조사가 관례화 되어 버렸다. 잠안재우기 고문도 대표적인 경우다. 신문이나 TV에서는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청에서 철야조사하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보도하고 국민들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군' 하는 식의 생각뿐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도 고문의 범주에 들어가며 우리들이 근절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경찰들은 대개의 경우 예감으로 수사를 한다. 먼저 범인일 것이라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증거, 자백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방식이다. 이는 펼쳐 고문방지조약에 어긋나는 행위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고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경찰, 수사요원들의 교육이라 하겠다. 교육은 상사가 아닌 인권단체등이 직접 하는 것이다. 고문에 관한 한 우리는 일제 때부터 미군정을 겪으며 뛰어난 기술을 습득했다. 이런 잔재들을 없애려면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나열해 보면

1. 변호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아직은 변

호인이 접견하는 것도 허락이 안되는 형편이지만 앞으로 변해야 한다.

2. 재판부에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 아무리 고문을 통해 증거를 만들어 낸다 해도 인정하지 않으면 고문할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고 자백을 강요하기보다는 과학적 물증을 찾아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산 박태범 부장판사의 경우처럼

고문에 의해 얻어낸 증거를 부정하는 판례가 쌓여야 한다.

3. 피해자가 고소하면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고문을 당했다고 고소하면 즉각 조사하

고 공평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는 고소를 하면 보통 형사사건의 경우는 무살되고, 민사사건의 경우는 최소한 3년 정도가 걸린다. 1심은 1년6개월-2년, 대법원까지는 5-6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이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고문은 은폐된 곳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고문가해자는 찾기 힘들다. 따라서 검찰은 고소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잡아들여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으니, 고문을 해도 고문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고문 역시 계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문방지 특별법을 만든다면 민사나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변호인접견권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고문의 경우 증거확보가 제일 큰 문제가 된다. 부산 강주영양 사건의 경우 증인도 많고 비디오 테잎이나 사진 같은 것으로 알리바이가 입증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고문을 당한 경우 증거제출이 상당히 어렵다 또한 의문사처럼 풀리지 않는 부분 또한 그렇다. 남미의 경우 고문에 의해 죽으면 그것을 법의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지금까지 고문방지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고문후유증

마지막으로 고문후유증에 대하여 살펴보자. 남미쪽과 아프리카쪽 사람들 319명에 대한 사례를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면 고문후유증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일단 사람은 고문을 당하면 심리적 불안감이나 공포성을 갖게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까만 짚차를 보면 피한다거나, 경찰서 앞을 돌아갈려 한다거나 경찰제복을 입은 사람을 피하거나 죽이고 싶다든지 하는 증세를 보이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고문 뒤에는 반드시 후유증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고문에 대해 막연히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신체적(육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후유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봄으로 고문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신체적 후유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문희생자들에 대한 정신요법을 소개한 RCT 자료('PSYCHOTHERAPY WITH TORTURE SURVIVORS', 1992) 80쪽을 보면 고문의 종류를 알 수 있다. 구타, 발로 차기, 도구사용, 모의처형, 고문장면 보여주기, 심지어 남미쪽에서는 당사자 앞에서 그의 부모나 애인을 고문한다고 한다.

3백19명이 이러한 유형의 고문을 당했고, 정신병증후군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신체적 증세는 구토, 청력약화, 위장장애, 관절통, 피부외상, 골절, 탈골 등이다. 더 심각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의 상처이다.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

유증도 못 밝혀낸다.

80년대 서노련 사건으로 민자당 김문수씨등 지도부 10여명이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는데 고문이 끝난 후 목욕을 시켜주고 안티프라민으로 마사지를 해 피멍 자국을 없애주었다고 증언했다. 텔레포로라는 고문은 단단한 물체 '자' 등으로 귀를 누르는 것, 피카다는 젖꼭지, 성기, 눈, 입 등 민감한 부분에 바늘을 사용해 전기충격을 가하는 것이며, 파날가는 발바닥에 고문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도 손톱 밑을 찌르거나 펜치로 잡아 빼는 고문도 있는데 무척 고통스럽다고 한다. 이런 고문을 당하면 여러 증세들이 심각하게 나오는데 특히 여자들인 경우 불임, 유산, 생리불순 등을 보인다.

정신적 후유증으로는 지각적 증후, 심리적 증후, 신경성 증후로 나뉜다. 지각적 증후는 방향감각상실, 기억력 장애, 독해력 저하 등이고, 심리적 증후는 의기소침, 홍분성, 공격성, 감정의 불안, 고립감, 사회성 위축 등이다. 또한 신경성 증후는 정력의 저하, 불면증, 성기능 장애, 악몽 등이 있다. 백기환씨의 경우 70년대 당한 고통 때문에 아직까지 약을 먹고 있다. 이처럼 신체적 경우와는 달리 정신적 후유증은 한 번 생기면 거의 죽을 때까지 간다고 보는게 일반적이다.

문국진씨의 경우 재입원 상태이고, 연대 84학번 김복영씨의 경우 올해 2월 자살했다. 최동씨의 경우도 괴로워하다가 자살했다. 이처럼 정신후유증의 경우 장기적이고 재발될 가능성도 높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고문후유증 자체의 사례보고가 안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지만 치료 또한 주로 약물치료에 의존한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정신적 후유증은 직업병이나 다른 병적인 증세와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복통, 두통을 호소할 수도 있고 심하면 정신분열증, 편집증, 기억상실증세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국진씨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아 왔고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약을 먹는 수준일뿐이다. 이 또한 약물중독등의 의학적 문제와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 등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몇 군데 치료센터가 있고, 파키스탄 필리핀에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아직 이런 시설이 없다. 덴마크의 경우 고문피해자재활센터는 80년 초에 만들어 졌다. 여기서는 치료의 극대화를 위해 아담한 형태의 공간을 갖추고 피해자들의 종합적 치료를 위해 상담도 하고 정신의학, 심리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두고 있다. 이러한 치료방법을 도입한 것은 RTC이다.

정치범보다 일반범에게 가해지는 고문은 더 광범위하고 집요하다. 검찰에 의해 향정신성 의약 투약, 소지판매, 제조 혐의로 구속된 경우 수사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는데도 재판과정에서 부인되어 현재 15년형을 살고 있다. 검찰에 의해 고문이 이루어진 경우 어떤 경우도 번복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처럼 일반인들도 정치범 못지않

게 고문을 굉장히 많이 당하였다. 그런데도 접근하기 힘든 이유는 첫째, 고문피해자들이 얘기하지 않으며 기억하기도 싫어하기 때문이며 다른 나라에서도 사례가 풍부하지 못하고 연구된 것이 거의 없다.

둘째, 정치범의 경우 대부분 고문에 의해 자존심, 명예를 상실하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기 싫어한다.

셋째, 사회의 인식 때문에 가족들이 숨기기도 한다. 후유증을 이야기하여도 보상이나 가해자의 처벌이 없기 때문에 소용없다는 것이다.

올해 고문방지조약이 발효되었는데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일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지금까지 고문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과거에 일어난 일로 인해 지금까지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다.

질문

-외국의 경우 고문가해자들이 처벌된 경우가 있는가?

= 대표적인 경우가 독일의 나치전범들에 대한 처벌이다. 서구에서는 부족하나마 고문금지조문이 세밀히 명시되어 있고 고문가해자에 대한 처벌 또한 정착되고 있다. 단 아직도 미국에선 인종차별에 의한 폭력이라든지 제3세계국가나 남미 등지에서 군사독재 하에서 벌어진 고문가해자들은 거의 처벌받지 않는 실정이라 한다.

-우리 나라가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고문방지조약이 87년에 발효된 이후 88년에 30개국이 가입했다. 우리 나라는 88년 노태우정권 때 가입한다고 말했다. 그 배경으로는 우리 나라가 세계에 고문이 늘 자행되는 인권오명국으로 찍혀있었기 때문이다. 즉 외교적 불이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의 하나였다. 당시 노태우는 우리 인권상황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외국순방 때마다 한국에는 정치범이 한 명도 없다고 떠들었다. 또한 박종철사건이 있던 87년 당시 재야나 법조계에서는 고문방지에 대한 필요성을 재기하였다.

하지만 국내법과 너무 많이 상충되어 91년 사회권 조약, 시민권 조약에 가입하고도 고문방지조약은 가입을 기피하였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며, 미국 역시 작년에 가입했다. 우리 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그 조약안에 '형사 관할권'이란 것이 있어 더욱 그랬다. 예를 들면 고문가해자인 이근안이 미국으로 도피했다면 미국정부측에 이근안을 잡아서 인도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반대로 고문피해자가 미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고문당했다고 제소해서 미국법정에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요청하면 불러들일 수도 있다. 또 개인인 경우 고문당했다고 직접

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약의 획기적인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권을 침해당하다고 보고 가입을 꺼리는 것이다. 그러나 고문에 한해서는 주권이나 국내를 떠나 전세계적인 인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결국 우리나라도 가입한다고 말은 했지만 6공 당시 역공당할 상황이 많았기에 가입하지 못했던 것이다. 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그 얘기가 나왔다. 정부는 93년도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하겠다고 호언장담했고 한승주외무장관은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가서 이를 약속했다. 외무부는 외교적 목적과 수단으로 가입을 생각했지만 안기부와 법무부는 법적 절차, 형사절차가 복잡해진다며 가입을 반대하였다. 이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한승주외무부장관은 어려운 입장에 처하였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93년 2월 8일 결국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가입하게 된다.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결의 217 A(III)에 따라 채택되고 선포된다.

전문(前文)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전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악만적 행위로 귀여워 있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은 보통 사람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고,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
이며, 그것이 전제에 대한 폭압의 끝임. 저항권.

나라 사이의 우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유엔의 여러 국민들은 그 현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고,

회원국은 유엔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신장을 성취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하기에,

그리하여 이제 유엔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과 회원국 관할권 아래에 있는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나라들이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 1 조 철학적·사상과의 전쟁!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제 2 조

서정적·행적·명적,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과 같은 그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한 사람이 속한 나라 또는 영토가 독립국이건 신탁통치지역이건, 비자치지역이건 또는 그 밖의 다른 어떤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곳이

→지국주의

건, 그 나라나 영토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자행되어서는 안된다.

제 3 조

모든 인간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생명권
물리적 물질에 대해서, 고속유지체와 대화!

제 4 조

아무도 노예의 신분이나 노예의 상태에 얹매어 있지 아니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이건 금지된다. 심지어 저주주의!! ↗ 청취!

제 5 조

아무도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자의적 처벌이 가능!!

제 6 조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서 한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국내

제 7 조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그 어떤 차별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한 차별의 선동에 대해서도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법의 평등 ↗ 자본가

제 8 조

모든 인간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법정에서 유효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동의 문제)

제 9 조

아무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국가주권(정치)

제 10 조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에 관하여 재판을 받게 될 때, “독립되고 변경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적인 심문을 완전히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갖는다. 국제법집의 정체성
세계인권선언의 구현방법

제 11 조

1. 형사상의 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보장들이 행사된 공적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판정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국제법집의 정체성
세계인권선언의 구현방법

2. 아무도 그것이 범해질 당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던 행위나 태만으로 인해 형사법으로서의 유죄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다. 또한 형사범죄가 행해졌을 당시의 적용 가능한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국제법집의 정체성
세계인권선언의 구현방법

제 12 조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집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당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국제법집의 정체성
세계인권선언의 구현방법

제 13 조

1. 모든 인간은 각국의 경계 안에서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에서도 떠나고 또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갖는다. 국제법집의 정체성
세계인권선언의 구현방법

제 14 조

1. 모든 인간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또 누릴 권리”를 갖는다. 국제법집의 정체성
세계인권선언의 구현방법 → 개인의 이익!

2. 이 권리, 비정치적 범죄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진정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소추의 경우에는 호소될 수 없다.

제 15 조

1. 모든 인간은 어느 한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

2. 아무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 자기가 원하는 주장을 선택하고 결정!!

제 16 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를 권리”를 갖는다. 이들은 결혼의 기간동안과 그 해소의 시점에 있어 결혼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가정은 결혼에서 지배(支配)되는!

2. 결혼은 장래의 배우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국제법집의 정체성
세계인권선언의 구현방법

다. 부자작

3. 가정은 사회의 사연적이고 근본적인 집단의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 결혼과 공동체, 나자작! 고령, 계층의 문제

제 17 조

1. 모든 인간은 타인과의 연합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갖는다.

2. 아무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의 구현방법

제 18 조

모든 인간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교리, 전례, 예배, 의식에 있어서 혼자 또는 나인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 19 조

모든 인간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 “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국경에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

→ 개인의 권리, 자유, 존엄성의 보장...

→ 학습의 방식과 같은 개인주의 ~

제 20 조

1. 모든 인간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제 21 조

1. 모든 인간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국 내의 공공기관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갖는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투표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서 표현된다.

제 22 조

- 모든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들 가지며, 국가 경제상황에 맞추어 적극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각국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들 갖는다.

제 23 조

1. 모든 인간은 일,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등의 권리들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들 갖는다.
3. 모든 일하는 인간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존을 보장해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대해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들 갖는다.

제 24 조

- 모든 인간은 합리적인 노동시간의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들 갖는다.

제 25 조

1. 모든 인간은, 의식주와 의료,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생계의 결핍의 경우에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들 갖는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들 갖는다. 모든 어린이는 서부적 서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악자 / 생활

제 26 조

1. 모든 인간은 교육 받을 권리들 갖는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실력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은 모든 나라들과 인종 또는 종교집단 사이에서 이해, 관용,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엔의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다. 평생학습의 확장과 존중의 원칙

제 27 조

1.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전과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들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산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득을 보호받을 권리들 갖는다.

제 28 조

- 모든 인간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들 갖는다.

제 29 조

1. 모든 인간은(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기여할 의무!*
2.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의 행사에 있어,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합당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일반인의 안녕을 위한 공정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제한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해서 행사될 수 없다.

보편적 → 특별적

제 30 조

이 선언의 그 어떤 조항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 중 어느 것이라도 파괴할 목적을 갖는 어떤 활동에 종사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유엔·인권·결정

국제인권선언

REDRESS

Seeking Reparation for Torture Survivors

6 Queen Square, London WC1N 3AR, United Kingdom
Tel: +44 (0) 171-278 9502 Fax: +44 (0) 171-278 9410 Email: redresstrust@gm.apc.org

① 소방 (消防)
② 경찰서 (警察署)
③ 법원 (法院) (cont)

Mr Junsik Seo
Salangbang
Seoul

04 July 1996

Dear Mr Seo,

I had the pleasure of meeting Mrs Yeon in London recently. She spoke of the case of her husband, Beg Seong-Houn, who she says is the first person in South Korea to have been awarded compensation for torture in detention.

First, I would like to ask whether you have an English translation of the judgment of October 1994 of the High Court in this case (or a summary)? If not, I would still be interested to receive a copy of the judgment in the Korean language. I know that you are now going to the Supreme Court in the hope of obtaining a higher amount of damages, and would be interested to know what happens. I understand that you do not yet have a date for the hearing.

Second, I would very much like to have copies of the documents concerning this case which you sent to Amnesty International, the UN, etc., which I assume are in English.

Third, I would be very grateful if you could tell me on the basis of which Korean laws you made the claim for compensation.

Mrs Yeon mentioned that you would like some assistance in obtaining materials which will help you in this and other cases where your lawyers are claiming compensation for torture. We would be pleased to help, and I am enclosing three documents which I hope are of use, namely:

1. Draft UN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enclosed is the latest draft, which is due to be discussed by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s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this summer).
2. "Considerations concerning criteria for financial compensation to victims of torture" by the Danish rehabilitation centre IRCT.
3. An article by R. Lillich on "Damages for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warded by US courts".

PATRONS

The Rt Hon The Lord Archer of Sandwell QC
The Rt Hon The Lord Crickhowell
Sir Peter Crill KBE
Dato' Param Cumaraswamy
Edward Datnow Esq FRCS
The Dowager Countess of Dundonald
Sir Denis Forman OBE
Anthony Grey Esq OBE
The Rt Hon The Lord Judd
Judge Rosalyn Higgins QC
The Lord Holme of Cheltenham CBE
Lady Langford-Holt
The Lord Lester of Herne Hill QC
Terence McCarthy Esq
The Lord Mishcon QC (Hon) DL
Miss Caroline Moorehead
Rabbi Julia Neuberger
The Rt Rev The Lord Bishop of Oxford
Dr Max Perutz OM CH CBE FRS Nobel Laureate
The Hon Lord Prosser
The Rt Hon The Lord Richard QC
The Rt Rev and Rt Hon The Lord Runcie MC DD
Lieutenant-General Sir David Scott-Barrett KBE MC
John Simpson Esq CBE
Professor David Weissbrodt
The Lord Williams of Mostyn QC
Professor Graham Zellick

TRUSTEES

Mrs Leah Levin (Chair)
Ben Emmerson Esq
Russell Lee Esq

LEGAL ADVISORY COUNCIL

Geoffrey Bindman Esq
Professor Kevin Boyle
Ms Louise Christian
Owen Davies Esq
Professor David Feldman
Ms Joanna Glynn
Professor David Harris
Oliver Thorold Esq
Ms Geraldine Van Bueren
Professor David Weissbrodt

However, I am uncertain as to what you already have, and what further documents you would like.

Redress is currently working to collect data on reparation for torture worldwide, and to build up a collection of examples of cases from other countries where compensation was awar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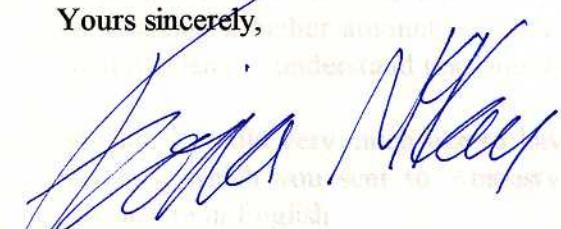
If you let me know more specifically what information it is that you would like, I will see if I can help you further.

Finally, I am enclosing a copy of Redress's last Annual Report.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With best regards,

Yours sincerely,



Fiona McKay
Legal Officer



Economic and Social
Council

Distr.
GENERAL

E/CN.4/Sub.2/1996/17
24 May 1996

ENGLISH
Original: ENGLISH, FRENCH
and SPANISH

COMMISSION ON HUMAN RIGHTS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Forty-eighth session

Item 10 of the provisional agenda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THE HUMAN RIGHTS OF DETAINEES

Revised set of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prepared by Mr. Theo van Boven pursuant to
Sub-Commission decision 1995/117

1. In its decision 1995/117 of 24 August 1995 the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requeste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to submit, without financial implications, in time for the Sub-Commission's consideration at its forty-eighth session, a revised set of proposed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subject in the light of existing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In the revised set of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the comments received from State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E/CN.4/Sub.2/1994/7 and Add.1 and E/CN.4/Sub.2/1995/17 and Add.1-2) as well as the relevant sections of the reports of the Sub-Commission's working group o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the question of compensation (E/CN.4/Sub.2/1994/22, paras. 18-39, and E/CN.4/Sub.2/1995/16, paras. 10-33) were to be taken into account.

2. In response to the above-mentioned decision of the Sub-Commission, the Special Rapporteur now submits, annexed hereto, the requested revised set of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see annex). In the preparation of this revised document the Special Rapporteur had the benefit of broad expertise

assembled in a workshop orga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and the Maastricht Centre for Human Rights of the University of Limburg which met in Geneva from 20 to 22 February 1996. The text reproduced in the annex is the result of an in-depth consideration of the subject by the workshop in the light of the comments and reports referred to above. It should be noted that a new title is proposed to reflect the contents of the revised document: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3. The Special Rapporteur expresses the hope that,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ion conveyed in Sub-Commission decision 1995/117 of 24 August 1995, as well as i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6/35 of 19 April 1996, the revised set of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hereby submitted will enable the Sub-Commission to make substantial progress on this matter at its forty-eighth session.

The obligation to respect and to ensur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includes the duty: to prevent violations; to investigate violations; to take appropriate action against the violators; and to afford remedies and reparation to victims. Particular attention must be paid to the prevention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to the duty to prosecute and punish perpetrators of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norms

1. Th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norms which every State has the duty to respect and to ensure respect for, are defined by international law and must be acknowledged and in any form made effective in national law. In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norm order, the State shall ensure that the norm providing the higher degree of protection shall be applied.

Right to a remedy

1. Every State shall ensure that adequate legal or other appropriate remedies are available to any person claiming that he or his family have been victimized. The right to a remedy against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norms includes the right of access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ocedures for their protection.

2. The legal system of every State shall provide for prompt and effective disciplinary, administrative, civil and criminal procedures so as to ensure readily accessible and adequate redress and protection from punishment and retaliation.

Every State shall provide for universal jurisdiction over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which constitute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Reparation

1. Reparation may be claimed individually and where appropriate collectively, by the direct victims, the immediate family, dependents or other persons or groups of persons connected with the direct victims.